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팔 2024 인권 보고서

개요

2024년 한 해 동안 네팔의 인권 현황에는 중대한 변화가 없었다.

신빙성 있는 보고에 따르면, 주요 인권 문제로는 자의적 또는 불법 살인, 고문 또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자의적 구금, 언론인에 대한 폭력 또는 폭력 위협 및 부당한 체포를 포함한 표현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그리고 강제노동을 포함한 인신매매 등이 있었다.

정부는 인권 침해를 저지른 공무원을 조사하기 위해 신빙성 있는 조치를 취했으나, 인권 침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원을 일관되게 처벌하지는 않았다.

제1절 생명권

a. 초법적 살인

2024년 한 해 동안 정부나 정부 요원이 자의적 또는 불법 살인을 자행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보안국에 의한 자의적 살인과 관련하여 단 한 건의 진정(allegations)도 접수하지 않았다.

교도소 당국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살인 혐의에 대한 일부 시민사회의 보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공식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2월 22일, 정부는 2023년 시위 중 경찰에 의해 부상을 입은 뒤 사망한 파담 림부(Padam Limbu)의 가족에게 50만 루피(3,73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2023년, 림부의 가족에게 130만 루피(9,700달러)를 지급한 바 있다. 정부는 림부의 죽음과 활동을 기려 그를 열사(martyr)로 선언했다.

구금 중 사망 및 불법 살인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비정부기구(NGO)들은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고문, 부적절한 의료 조치, 열악한 수감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교도소 내 사망 사례가 4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4월 8일, 수닐 샤히(Sunil Shahi)가 탈옥 시도 후 직원과 다른 수감자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것으로 보고된 후 카일랄리(Kailali) 지구 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샤히의 시신에서는 쇠몽둥이로 구타당한 것을 포함하여 심각한 가혹행위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부검 보고서는 미결 상태였다.

b. 강제 인구 조절

정부 당국에 의한 강제 낙태나 비자발적 불임 시술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

특히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혼외 임신을 한 여성은 상당한 사회적 낙인에 시달렸다. 아동 결혼은 불법이지만 농촌 지역에서 특히 만연했으며, 비정부기구(NGO)들에 따르면 많은 여아가 정서적 및 신체적으로 미숙한 시기에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을 받았다.

제2절 자유권

a. 언론의 자유

헌법과 법률은 언론과 기타 미디어 구성원 등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 권리를 존중했다. 인권 변호사들과 일부 기자는 헌법과 법률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주요 문화 행사 개최를 저지함으로써 국내 티베트 공동체 구성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법률상, 소셜 미디어 등에서 고위 정부 관리를 강도 높게 비난한 경우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네팔 기자연맹(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 FNJ)에 따르면, 2월 19일 네팔군이 카트만두(Kathmandu) 툰디켈(Tundikhel)에서 개최한 국가 민주주의의 날 행사를 취재하려던 기자가 행사장 입장을 거부당했다.

이에 사진기자는 군 전시관 정문에서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네팔 기자연맹(FNJ)에 따르면, 기자들은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별도의 출입증을 요구받아 입장을 거부당했다. 네팔 기자연맹(FNJ)과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행사의 공공성과 과거의 취재 관례를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불필요하게 제한적이라고 보았다.

신체적 공격, 구금 및 압력

부패를 보도한 언론인에 대한 위협과 공격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데, 여기에는 네팔 탐사보도센터(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Nepal)의 고팔 다할(Gopal Dahal)의 사례도 해당됐다. 고팔은 12월에 시장의 시정 기록을 다룬 탐사 보고서를 발표한 후 다란시 시장인 하르카 삼팡(Harka Sampang)과 그의 지지자들로부터 개인 신상과 직접 활동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정부, 군, 정보기관 또는 경찰, 범죄 조직, 무장 극단주의 단체나 반군 집단에 의한 검열

언론인과 비정부기구(NGO)들은 형법, 명예훼손법, 「방송법」, 「언론 노동자법」 등 여러 법률이 공인 관련 보도나 정치적 영향력에 관한 보도와 같은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언론의 자기검열이 초래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언론의 안전과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

네팔 기자연맹(FNJ)에 따르면, 7월 28일 대중교통 운영업자가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는 시위를 취재하던 언론인의 재산을 파손하고 폭행했다. 정부는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네팔 기자연맹(FNJ)은 또한 전 사무총장이 국내 밀수 사건을 보도하여 살해 협박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b. 노동자 권리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2017년 노동법(Labor Act 2017)」이 노동 시장을 규제했다. 취약한 규제 기관과 제도, 제한된 인지도와 이해도, 부적절한 사법제도 그리고 서비스 제공의 주체이자 규제 기관이라는 노동 당국의 이중적 역할 등의 요인이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했다.

네팔의 법률은 정부가 체제 전복 또는 선동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하는 조직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보장한다. 공식 부문 여부에 관계없이 노동자 모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 비시민권자는 노조 간부로 선출되거나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다.

특정 노동자는 파업 및 단체교섭의 권리가 있었으나, 정부가 필수공익사업으로 규정한 대중교통, 은행, 보안, 의료 분야의 직원은 제외되었다. 또한, 군인, 경찰관, 차관급 이상의 정부 관료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네팔의 법률은 경제특구(SEZ) 내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률은 노조가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작업장 노동자의 최소 25%를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인 노조 단체를 결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으며, 비공식 노조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파업권과 정부 교섭권을 인정받는다.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 또한 최소 500명이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이들 노조는 강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있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많은 개인이 가입을 망설였다. 게다가, 노조의 제한적인 활동 범위와 조직력 부족으로 노동자 대부분이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로 인해 노조 조직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했으나, 민간 부문은 그렇지 않았다. 공공 부문은 차별 대우 등과 같은 시민권 침해에 관련된 법률의 처벌과 상응하는 처벌이 적용되었으나, 민간 부문에서 정부가 특히, 비공식 경제 부문에 법률과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국제노동기구(ILO)와 네팔 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에 따르면, 위반자 처벌 사례는 거의 없었다. 민간 및 비공식 부문의 노동법 집행은 효과적이지 않았다. 노동법원은 노동법 위반 및 기타 노동 관련 문제를 다루었다. 노동 활동가들은 법원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며, 미결 사건이 적체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네팔의 법률은 단체교섭을 포함한 공식적인 노조 임무 수행 시 발생하는 불리한 법적 조치로부터 노조 대표를 보호하며, 반(反)노조 차별을 금지했다. 노조 활동 참여로 해고된 노동자는 노동법원이나 준사법적 권한 및 중재 권한을 모두 가진 노동국에 구제 신청을 하여 복직을 요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건은 조정을 통해 해결되었다. 법률은 법적 요건을 미충족하는 파업에 참여하는 행위를 직무 태만으로 규정하며, 그 결과 참여자는 정직 또는 해고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등록된 노조 회원의 60% 이상이 찬성 서명을 해야 하며, 노조는 파업 돌입 30일 전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노조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과반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30일 전의 사전 통지 없이 파업을 요구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은 「2017년 노동법(Labor Act 2017)」에 따라 경제특구(SEZ)에서 허용되지 않았으나,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존중되었다.

정부가 필수공익사업 분야의 파업을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교육, 운송 부문의 노동자가 때때로 파업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노조는 정당과 깊이 관련돼 있으나 노동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활동했다. 정부는 노동자 조직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노조 지도자를 위협하지 않았다.

강제 또는 의무 노동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허용 가능한 근로 조건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률

최저임금은 공식 빈곤선을 넘어섰지만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준을 겨우 충족하는 정도였다. 네팔의 최저임금은 세계은행의 2022년 국제 빈곤선을 크게 밑돌았다.

법률은 주 48시간 근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 1일 휴무와 5시간 근무당 30분의 휴식시간을 보장했다. 법률은 초과근무를 하루 4시간, 주 2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시간당 50%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과도한 강제 초과근무는 금지되었다. 직원들은 또한 유급 공휴일, 병가, 연차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가, 경조휴가, 기타 특별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었다.

법률은 적립(퇴직)연금, 주거시설, 여성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아동 돌봄 서비스, 출산 혜택 등의 복리후생을 제공했다.

경제특구(SEZ) 내 임금률은 경제특구 당국이 결정하되, 국가 최저임금 미만으로는 설정할 수 없었다. 휴가 기간, 보험, 상여금, 사회보장은 경제특구 내 개별 산업체가 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는 아동노동과 관련된 임금 위반과 전 부채 담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임금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

네팔의 법률은 적절한 산업안전보건(OSH)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노동고용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가 그 집행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의 이행과 집행은 극히 미비했으며, 동 부처 스스로도 산업안전보건(OSH)을 노동법 집행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분야로 간주했다. 동 부처는 농업, 건설업, 광업, 운송업, 제조업(공장 근로) 등 국가 주요 부문 전반에서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

임금, 근로 시간 및 산업안전보건 법규 집행

정부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산업안전보건(OSH) 관련 법규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규 집행의 책임은 노동고용사회보장부(Ministry of Labor, Employment, and Social Security)에 있었으나, 동 부처는 임금 및 근로 시간 법규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규를 집행하기에 충분한 수의 근로감독관을 고용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에게는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권한이 있었다.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법률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기와 같은 유사 범죄의 처벌과 상응했으나, 작업장 현장점검 건수는 낮았다. 노동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수가 부족하여 산업안전보건(OSH) 기준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집행할 수 없었다. 비정부기구(NGO)인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또한 근로감독관 직책이 공석인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네팔 노동조합총연맹(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및 기타 노동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공식 부문의 대부분 공장이 최저임금 및 근로 시간 관련 법률을 준수했으나, 비공식 부문에서는 이행 정도가 달랐다.

산업안전보건(OSH) 규정 위반 시 처벌은 사기, 과실 등 유사 범죄에 대한 처벌과 상응하지 않으며, 전국적으로 위반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OSH) 조항을 집행할 규제 또는 행정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 노동고용사회보장부에는 산업안전보건(OSH) 전담 사무소도 없었고, 이 분야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은 근로감독관도 없었다.

법적으로 공장 감독관들이 고용주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었지만, 안전 기준 집행은 여전히 미미했고 감시도 취약했다.

작업장 사망자와 사고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할 수 없었다. 노동법과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근로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규정했지만, 도시와 마을에 소재하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체의 경우, 고용주가 해고 위협 등을 가하며 근로자에게 이러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근로감독관 수는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에 부족했다.

연대센터(Solidarity Center)에 따르면, 법률은 노동 감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는 자발적이었고 정부는 감사를 실시할 역량이 부족했으며, 실시한 감사의 정확성 또한 의문스러웠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의 70% 이상이 비공식 경제 부문에 종사했으며, 여성의 90% 이상이 가사 노동을 포함한 비공식 부문에 고용되었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동법 집행은 최소 수준이었으며, 준수 여부 감시 또한 취약했다.

c. 실종 및 납치

실종

강제실종에 대한 정부 당국 또는 정부 관련 기관의 보고는 없었다.

8월 29일, 람찬드라 파우델(Ramchandra Poudel)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강제실종 진상규명 및 진실화해위원회법(Enforced Disappearances Enquiry,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법은 1996~2006년 내전 기간 이후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과도기 정의를 다시 이루는 게 목적이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ffice of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내전 기간 동안 1만 3,000명이 사망하고 1,300명이 실종되었으며, 이들 중 다수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라고 추정했다. 10월 현재, 네팔 정부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변경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기소 없는 장기 구금

네팔의 법률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이 법정에서 자신의 체포나 구금의 적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규정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법집행기관이 수사 개시 전 관행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하고 유죄 판결로 끝난 상당수 사건에서 강제 자백을 유도했다고 보고했다. 인권단체들은 보안국이 자의적 구금을 실시하고 24시간 구금권을 남용하여 정식 기소 없이 더 오랜 기간 불법적으로 구금했으며, 일부 사례에서는 적절한 변호인 접견, 음식, 약품 제공 없이, 또는 부적절한 시설에서 구금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네팔 기자연맹(FNJ)은 5월 21일 칸티푸르 미디어 그룹(Kantipur Media Group) 회장인 카일라시 시로히야(Kailash Sirohiya)가 이중 국가신분증 번호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고했다. 네팔 기자연맹(FNJ)은 해당 체포가 국내 최대 신문인 *칸티푸르 데일리*(Kantipur Daily)가 유력 정치인의 다양한 혐의를 보도한 것을 겨냥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은 보안 및 마약 위반 혐의 사건이나 범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국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뒤 24시간 이내(이동 시간 제외)에 용의자를 법정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법원이 구금을 승인한 경우, 법률은 일반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형사 기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최대 25일간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별한 경우에는 이 기간이 연장되었다. 마약 위반의 경우 용의자를 최대 3개월간, 조직범죄 혐의의 경우 60일간, 부패 혐의의 경우 6개월간 구금할 수 있었다.

헌법은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구금자가 국선변호인이나 본인이 선택한 변호인에게 접견할 권리를 규정했다. 민사 및 형사 법정에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는 법정 변호사를 통해 빈곤층에게도 법률 지원이 제공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때때로 의문시되었다. 독립 기구가 형사 위반 혐의로 구금된 사람 중 일부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작동 가능한 보석제도가 존재했으며, 피고인은 인신보호 영장을 청구할 권리도 있었다.

인권단체에 따르면, 일부 사례에서 피구금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24시간 제한을 훨씬 넘어서 사법 당국에 출석했는데, 이는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한 상처가 낫기를 기다리기 위함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정부기구(NGO)들은 경찰이 법정에 피구금자를 출석시킬 준비가 되었을 때 피구금자의 이름을 등록하여 24시간 내 출석 요건을 빈번히 회피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당국은 수사 이전에 용의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은 수사 이전에 체포하는 것이었으며, 이 경우 용의자를 25일 이내에 기소하거나 자백을 받거나 석방해야 했다. 경찰이 25일이라는 기한 전까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용의자에게 언어적 위협, 신체적 해를 가하고 강압적 전술을 사용하여 자백을 강요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법원은 경찰이 받은 자백의 90% 이상을 기각했다.

비정부기구(NGO)인 비공식부문서비스센터(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는 1월부터 8월까지 (적시 영장 제시 없는) 자의적 체포 사례가 3건 있었음을 확인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023년 정치 시위에서 발생한 대규모 체포 사태로 해당 유형의 사건이 급감했다. 2024년에는 그러한 사건이 보고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NGO) 애드보커시 포럼(Advocacy Forum)의 보고에 따르면, 1,167건 중 8%에 달하는 약 93명이 연루된 사건에서 경찰이 24시간 구금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의적 체포 및 적절한 법적 감독 없는 장기 구금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는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한 내용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장기 미결구금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법원의 업무 적체와 긴 재판절차로 인해 개인은 유죄 판결 이전에 수년간 구금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장기 미결구금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은 수감자는 복역한 기간에 대해 인정을 받았다. 피구금자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 혐의에 적용되는 징역 기간을 초과하여 구금될 수 없었다. 장기간 미결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어떠한 인정이나 보상도 받지 못했다.

법률에 따라 보안국은 국내 안보와 치안, 다른 국가와의 우호 관계, 또는 서로 다른 카스트나 종교 집단 구성원 간의 관계를 위협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구금할 수 있었다. 정부는 구금이 법률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 범죄 기소 없이 최대 12개월간 예방적 구금을 할 수 있었다. 예방적 구금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안국은 법원에 보고해야 했다. 준사법위원회가 예방적 구금을 검토하고 지속적인 구금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예방적 구금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d. 종교의 자유 침해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religiousfreedomreport/>

e. 인신매매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참조:
<https://www.state.gov/trafficking-in-persons-report/>

제3절 개인의 안전

a.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

헌법은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와 같은 행위를 금지했지만, 정부 관리들이 이러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신빙성 있는 보고가 있었다. 법률은 고문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을 명시했으며,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했다. 그러나 고문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에 불과했다.

인권활동가들과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찰은 용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해 주로 구타를 비롯한 심각한 형태의 학대와 장기 미결구금 등의 방식을 사용했다. 비정부기구(NGO)인 애드보커시 포럼(Advocacy Forum)은 8월 중순까지 경찰이 미결구금 시설에서 16명의 용의자를 고문했다고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빈곤층이나 소외계층 출신인 개인은 특히 카스트나 민족 기반 차별로 인해 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인권활동가들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경찰의 고문 혐의에 대한 신고가 9건 접수되었다. 보안국 내 만연한 불처벌 관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구금 중 고문과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해당 경찰서가 사건이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동료나 상급자에 대한 신고 접수와 수사 개시를 꺼렸고, 피해자들은 경찰이나 기타 관리들의 협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고소장 제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압박에 못 이겨 재판 외 합의를 하기도 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법원이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으로 고문 혐의가 제기된 많은 사건을 기각했으며, 법원이 경찰에 대한 징계 결정을 일관성 없이 집행했다고 보고했다.

b. 아동 보호

아동 노동

미국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최악의 아동 노동 형태에 관한 보고서(Findings on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r)*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ilab/resources/reports/child-labor/findings/>

아동 결혼

법적으로는 남녀 모두 20세 이전의 결혼이 금지되지만, 실제 네팔 여아의 아동 결혼 및 출산율은 높았다. 아동 결혼은 18세 미만 개인 간의 결혼으로 정의되어 있으며, 조혼은 18세에서 20세 사이 개인의 결혼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회·경제·문화적 인식과 관습이 조혼과 강제 결혼 관행을 고착화했으며, 특히 달리트와 마데시족 공동체에서 흔한 일이었다. 법률은 아동 결혼을 한 여아의 연령에 따라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처벌에는 징역형과 벌금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징수된 벌금은 당사자인 여아에게 지급되었다. 법률은 아동 결혼 사건이 당국에 접수될 때마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조혼과 강제 결혼 관행은 여아의 교육 기회를 제한하고 가정폭력 및 성매매를 포함한 성적 학대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켰다.

7월 중순 기준 직전 1년 동안, 경찰은 전국에서 52건의 아동 결혼 사례를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부모가 모르는 상태에서 또는 부모의 동의 없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증가 추세를 보고했다.

c. 난민 보호

정부는 언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엔난민기구(UNHCR) 및 기타 인도주의 기구와 협력하여 난민, 귀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 그리고 기타 관심 대상자에게 보호와 지원을 제공했다. 내무부 산하 난민 업무 조정 국가 부서(National Unit for Coordination of Refugee Affairs)는 부탄 난민과 네팔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이들 지방정부의 승인을 받아 일반적인 영리 활동과 무역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지방 행정당국의 추천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8월 16일, 국가인권위원회(NHRC)와 유엔난민기구(UNHCR) 간에 각자의 권한 내에서 난민의 권리를 공동으로 옹호하기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티베트와 부탄 난민은 범죄자들이 네팔 시민을 부탄 난민으로 위조해 등록하려 시도했던 2023년 '부탄 난민 허위 등록' 비리 사건 이후 정부가 출생증명서와 기타 시민 등록 발급을 제한했다고 보고했다.

제1차 망명 제공

법률은 망명이나 난민 지위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난민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 정부는 오직 티베트인과 부탄인에 한해서만 난민지위를 인정했으며 다른 국적을 가진 1,000명 미만의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비정규 이주자로 간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심사를 마치고,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여 일부 지원을 제공했다.

정부는 제3국 재정착이 허가된 난민에게 출국 허가증을 발급하기 전, 불법 체류에 대한 벌금으로 일일 1,063루피(약 8달러)에 달하는 고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정부는 1990년 이후 입국한 티베트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도착한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은 인도로 이동했고, 국내에 남은 사람도 있었으나 그 수는 알 수 없었다.

정부는 1995년 이후 티베트 난민에게 난민 카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체류 중인 약 1만 2,000명의 티베트 난민 중 4분의 3이 미등록 상태라고 추정했으며, 여기에는 1995년 당시 16세 미만이었거나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다. 9월 기준으로 유엔난민기구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등 다른 국가 출신의 도시 난민 또는 국제적 보호 대상자 695명과 망명 신청자 295명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유엔난민기구가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계속 거부했다.

d. 반유대주의 행위 및 반유대주의 선동

국내에는 소수의 유대인 인구가 있었으나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